

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개정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6조(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)</p> <p>① 운영인은 보세판매장 판매용물품을 보관창고(통합물류창고 또는 지정장치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반입한 후 매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운영인이 사전에 세관장에게 반입전 판매를 신청한 물품은 판매(주문 또는 결제를 포함한다) 이후에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에 반입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6조(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다만, <u>냉장 보관이 필요한 내국물품은 세관장이 재고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장으로 바로 반입할 수 있으며, 운영인은 반입 즉시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냉장 보관식품의 매장 직반입을 허용하여 물류비용 절감 지원 (※적극행정위원회 의결)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<u><신설></u>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(적재화물목록 제출물품 및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보세운송 반입물품을 제외)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⑥ 세관장은 제4항 단서에 따른 서류제출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선별된</p>	<p>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이 사전에 세관장에게 반입전 판매를 신청한 물품은 판매(주문 또는 결제를 포함한다) 이후에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에 반입하여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 <p>⑥ 제5항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----- 제5항 ----- -----</p>	<p>○ 제6조 제1항 단서 조항에서 이동</p> <p>○ 항 번호 변경</p> <p>○ 항 번호 변경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·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⑦ 세관장이 제6항에 따라 검사·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사항을 통보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제5항 각 호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의 경우 전자문서로 확인사항 통보</p> <p>⑧ ~ ⑨ (생략)</p> <p>제7조(내국물품의 반출입절차) ① 운영인이 내국물품을 보세관매장에 반입한 때에는 제6조제5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반입신고를 한</p>	<p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----- 제7항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제6항 ----- -----</p> <p>⑨ ~ ⑩ (현행 제8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)</p> <p>제7조(내국물품의 반출입절차) ① ----- ----- ----- 제6조제6항----- -----.</p>	<p>○ 항 번호 변경</p> <p>○ 항 번호 변경</p> <p>○ 항 번호 변경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것으로 본다.</p> <p>② 세관장은 환급대상내국물품을 보세 판매장에 공급한 자가 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(이하 “환급고시”라 한다) 제5장 제1절에 따라 환급대상내국물품의 보세 판매장 반입확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<u>제6조제5항</u>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6조제6항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항 번호 변경</p>
<p>제8조(통합물류창고 등 반출입 물품의 관리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통합물류창고 운영인은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된 전체 물품의 재고현황을</p>	<p>제8조(통합물류창고 등 반출입 물품의 관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/p>	

현행	개정안	비고
<p>확인 할 수 있도록 반출입 관리하고, 제 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 후의 물품은 각 보세판매장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. 다만, 물품을 전산에 의하여 보관·관리하는 자동화 보관시설을 갖추고 재고관리가 적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통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>제9조(판매장 진열 및 판매)</p> <p>①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한 때에는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을 전산관리하고, <u>세관에 전자문서로 실시간 전송(시내면세점에서 판매된 물품을 보세운송 하는 경우 보세운송 신고 시)하여야</u></p>	<p>-----, 제 6조제5항 및 제6항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판매장 진열 및 판매)</p> <p>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,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때에 세관에 전자문서로 실시간 전송하여야 한다.</p>	<p>○ 항 번호 변경</p> <p>○ 출·입국장 보세판매장 전자상거래 판매 허용에 따른 판매실적 신고 방법 신설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<u>한다.</u>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14조(판매물품의 인도)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인도자는 인도장에 보세운송 물품이 도착된 때에 제12조제4항에 따라 잠금과 봉인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잠금을 개봉하고 보세운송 책임자와 인도자가 판매물품 인수인계서(별지 제12</p>	<p><u>1. 시내면세점에서 판매된 물품을 보세운송하는 경우는 보세운송 신고한 때</u></p> <p><u>2. 입국장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에서 제1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한 때</u></p> <p><u>3. 그 외의 경우에는 물품을 판매한 때</u>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판매물품의 인도)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	

현행	개정안	비고
<p>호서식의 반송 및 간이 보세운송 신고서를 판매물품 인수인계서로 고쳐 사용)를 작성하여 <u>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</u>, 세관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보세운송 도착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.</p> <p>⑥ ~ ⑭ (생략)</p> <p>제18조(미인도 물품의 처리) ① 인도자는 판매물품이 인도장에 반입된 후 5일 이상이 경과하여도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<u>미인도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고</u>, 인도자의 입회하에 현품을 행낭 또는 각종 운반용 박스 등에 넣은 후 보세사가 잠금 또는 봉인을 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해당 물품을 판매한 운영인에게</p>	<p>----- ----- ----- <u>인수인계(전자문서에 의한 인수인계를 포함한다)</u>를 하여야 하며, ----- -----.</p> <p>⑥ ~ ⑭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미인도 물품의 처리) ① ----- ----- ----- <u>재고관리시스템에 미인도 물품 확인 등록을 하고</u>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○ 보세운송 업무의 전자적 처리(QR코드 등)를 허용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</p> <p>○ 미인도 물품목록을 서류 제출 방식에서 전산 확인 등록하는 방식으로 개선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인계하여야 한다. 다만, 판매취소 등 구매자의 미인수 의사가 명확한 미인도 물품에 대하여는 인도장 반입 후 5일 경과 전이라도 운영인에게 인계할 수 있다.</p> <p>제19조(반품, 분실물 등의 처리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운영인이 판매물품을 교환하여 준 경우에는 그 반품된 물품은 <u>보세판매장</u> 또는 <u>통합물류창고</u>에 재반입 절차를 취하고, 교환하여 주는 물품은 판매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. 또한 가격상의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병기하여야 하며, 판매물품을 환불하여 준 경우에는 그 반품된 물품은 <u>보세판매장</u>에 재반입 절차를 취하며 반환된 현금</p>	<p>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19조(반품, 분실물 등의 처리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보세판매장</u> 또는 <u>통합물류창고</u>에 재반입 -----</p>	<p>○ 환불 처리한 판매 물품의 반환(반입) 장소를 확대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은 판매취소로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.</p> <p>제23조(세관장의 업무감독) ① ~ ⑦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제30조(서류의 보관)</p> <p>① 운영인은 <u>물품반입검사신청필증(구 비서류 포함), 보세운송신고필증 및 교환권 등 판매물품 반출입과 판매에 관한 자료</u>를 영 제3조에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, 영에 규정되지 않은 자료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.</p> <p>제23조(세관장의 업무감독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제4항에 따라 재고조사를 받는 보세 판매장에 대해서는 「<u>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</u>」 제20조제1항제3, 4호에 대한 보고 및 제22조제4항제4, 5, 6호에 대한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제30조(서류의 보관)</p> <p>① ----- <u>물품반입검사신청·보세운송신고에 관한 자료 및 교환권 등 판매물품 반출입과 판매에 관한 자료</u> ----- ----- -----.</p>	<p>하여 운영인의 물류비용 절감 지원</p> <p>○ 보세판매장 운영인에 대한 중복 점검(보고)사항을 개선하여 운영인 부담 경감 (※적극행정위원회 의결)</p> <p>○ 서류 출력이 필요한 필증 보관 의무를 삭제하여, 서류를 자료보관매체에 보관할 수 있게 하여 운영인 서류 보관 부담 경감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② (생략)</p> <p>제31조(준용규정) ① (생략)</p> <p>② 제6조제4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서의 신고서 처리는 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제34조(규제의 재검토) 관세청장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<u>2019년 1월 1일</u>을 기준으로 <u>매 5년</u>이 되는 시점(<u>매 5년째의 12월 31일</u>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1조(준용규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6조제5항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4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<u>2024년 1월 1일</u>----- <u>매 3년</u>-----(<u>매 3년째의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○ 항 번호 변경</p> <p>○ 재검토 기한 재설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 data-bbox="203 352 376 392"><신설></p> <p data-bbox="203 523 376 563"><신설></p>	<p data-bbox="958 260 1518 300"><u>부칙<고시 제2024-00호, 2024. 2. .></u></p> <p data-bbox="891 352 1585 459"><u>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2월 00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91 523 1585 834"><u>제2조(미인도 물품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관련 전산시스템이 개선되는 시점부터 적용하며,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 적용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/u></p>	